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27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D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의영, 강인경(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29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심급의 이익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9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D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검 사	김정연(기소), 이채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의영, 강인경(피고인 A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박창제, 이소영(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현소정(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호(피고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 F,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이하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A의 부장인 피고인 D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B의 입찰 제출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입찰공고 마감시한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였고, C의 입찰서에 한글로 기재된 입찰가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입찰가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 3] 제3호, 제10호, 제11호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선정지침 제5조 제1항의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됨으로써 입찰을 전제로 한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부존재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D에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의 상무였던 H이 일관되게 피고인 D로부터 입찰서류 파일이 담긴 USB를 받아 위 파일에 기재된 가격 그대로 입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직원 I 역시 피고인 D가 가져온 USB에 담긴 견적자료를 백업받았는데 위 USB에는 공사자재들의 금액 및 입찰가 등이 기재된 내역서가 있어 위 입찰가를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H, I가 피고인 D로부터 받았다는 USB에서 백업받은 자료 중 IPC에서 발견된 파일(원가계산서_0703)은 피고인 A의 업무PC에 저장되어 있던 'J아파트내역서' 파일과 '만든이', '작성날짜',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에 대한 상세내역이 같은 점, ③ 피고인 C의 입찰서의 경우, 한글로 입력된 입찰가가 '금이백이십일억원정', 입찰보증금이 '금십일억오백만원정(1,105,000,000)'으로 피고인 B의 입찰가 및 입찰보증금과 동일한데, 이 사건은 예정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입찰이므로 개별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피고인 C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예상금액을 산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 B, C는 아파트 배관교체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고, 입찰 당시 시장조사를 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족하여 원가계산



조차도 직접 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입찰에 낙찰을 받기 위한 진정한 의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피고인 B, C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이나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설명 요청을 받고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업체 사이에 입찰이 임박한 시기 또는 입찰이 진행 중인 시기에 서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⑥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투찰 예정인 입찰가 보다 높은 금액이 입찰가로 기재된 내역서 등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B, C 측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뛰어넘어서 앞서 거시한 경쟁요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E, 피고인 B의 F, 피고인 C의 G, 피고인 D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입찰 무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제8호) 등을



규정하고,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53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인 피고인 A, B, C 측과 피고인 D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이상, 이후 진행된 이 사건 입찰의 유·무효와는 관계없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원심이 고려한 불리한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들은 소위 들러리 입찰의 방식으로 피고인 A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범행 내용 및 방법, 결과,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과 유리한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 D가 초범인 점, 피고인 B, C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_____

 판사 송지현 _____

 판사 안민주 _____